

## 가족관계등록신고사항 통보에 따른 직권정정사항 공고

주민등록법 제14조제3항에 따라 아래 세대의 세대주가 사망했음을 등록기준지(부상광역시 중구)로부터 통보 받아, 아래와 같이 세대별 주민등록표 기재순위에 따라 동거인을 세대주로 직권정정 하였음을 통보하였으나 반송되어 같은 사항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 《직권정정사항》

성명(생년월일)	변경전	변경후	변경사유발생일	변동일자
이홍욱(73.12.15)	세대주	사망말소	2016.01.12.	2016.01.15.
나태영(73.07.10)	동거인	세대주	2016.01.12.	2016.01.15.

위 직권정정사항에 대한 문의 전화 ( ☎ 032-560-3356 )

2016년 2월 19일

인천광역시 서구 검단4동장

